



: 2017-12-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16가단5071771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17. 8. 29.  
판 결 선 고 2017. 9. 29.

###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8,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2017. 9.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주위적;

피고 C는 원고에게 194,908,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82,868,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 B은 원고에게 79,4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 가. 유토큰에의 투자 관련

1) 피고 B은 2014. 10. 2.경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태국의 유편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유토큰이 비트코인 이상의 세계적 통화로서 높은 가치 상승이 예견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유토큰의 매입을 원고에게 권유하였고, 원고는 당시 설정된 시세에 따라서 유토큰 12,000,000원 상당을 2회에 걸쳐서 매입하고 그 대금 24,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4. 10. 31.경 원고에게 유토큰이 매일 1%씩 가치가 상승하니 1억 원을 투자할 경우에 하루에 약 100만 원씩 가치가 상승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유토큰의 추가 매입을 권유하고, 그와 동시에 환전이 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금의 회수 보장을 원하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유토큰 매입을 위한 투자금으로 60,000,000원을 피



고 B에게 지급하였다.

1. 투자자가 요구한 시점(2015. 1월 이후)에 30,000,000원에 대해 토큰매각을 통해 2015. 3. 30.까지 현금화하여 주기로 한다.

이 때 현금지급액은 매각 요청한 날의 유토큰 시가의 90% 가격으로 산정 현금한다.

2. 이의 이행을 정히 준수할 것이며 혹 불이행시 위 현금 약속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이후 유토큰은 시세가 급격히 하락하여 거래도 냉각되고, 원고가 유토큰에 투자한 돈은 매각되어 현금화되지 못하였다.

4) 피고 B은 원고의 투자를 유치한 데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나. TM 인덱스 상품에의 투자 관련

1) 피고 B은 2015. 4. 15. 자신의 서울 강남구 D 빌딩 내 사무소에서 전항의 유토큰 매입에 의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원고에게 또 다른 투자상품으로서 'TM 인덱스'라는 금융상품이 있다고 하면서 이는 호주에 본사가 있는 세계 유수의 기업인 TM 인덱스가 자신의 상호를 넣어서 발매하는 지수 상품인데 이 회사의 영업실적 등으로 미루어 전망이 매우 좋은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그 중 TM인덱스 T 상품이 투자원금의 회수기간이 4.2개월이므로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러한 전망을 믿고 같은 날 TM 인덱스 T 상품에 대한 투자금으로 49,434,000원을 피고 B이 지정한 소외 E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5. 5. 22.경 원고에게 수익률이 더 높고 투자원금의 회수기간도 2.8개월로 종전보다 짧아진 TM인덱스 M 상품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의구심을 가지는 원고에게 그로부터 3개월 이후인 2015. 8. 22. 투자 원금 49,434,000원에 대해 본인의 책임으로 회수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원금의 회수가 확실하다고 믿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49,434,000원을 지급받았다.

3) 그러나 TM 인덱스는 호주에 사업장만 존재할 뿐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정상적인 지수 선물 투자를 할 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당국에 신고 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이며, 국내 관계 법령상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의 해외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TM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고, 투자자들로부터 국내 개인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돈을 호주에 있는 위 회사로 송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위와 같이 국내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투자금을 지수 선물 투자에 사용할 수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나 TM 인덱스의 현황이 점차 드러나고 실적은 쌓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신규 모집의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로 인한 투자원금의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4)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TM 인덱스에 투자한 돈이 전혀 회수되지 않고 동요하자, 위 회사가 벨리즈라는 타 회사로부터 금융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등 사업상 발전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2015. 9. 6.부터는 위 투자금에 기초하여 인출할 수 있는 돈이 정상적으로 인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하여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5) 피고 B은 원고의 투자금을 유치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6) 그러나 원고는 위 TM 인덱스에 투자한 돈을 원래의 예상 경로에 따라서는 전



혀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전항의 이행약정에 따라 약속받은 49,434,000 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상화폐인 유토큰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그 투자금을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아간 사람으로서 그 거래의 성립과 이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유토큰이 매일 1% 이상씩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례적인 전망을 수익예상의 근거로서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한데다가 법정화폐와는 달리 환전이 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투자 회수를 위하여는 판매자를 통하여 직접 환전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피고 B 본인이 이러한 환전을 해주겠다고 하여 사실상 투자금의 일부의 조기 회수를 약속해줌으로써 위와 같은 환상적인 수익 전망과 함께 그 회수의 현실적 가능성을 함께 믿은 원고가 이 사건 유토큰 매입을 위한 거래를 한 것이고, 이후 피고 B이 제시한 전망과는 달리 유토큰은 시세가 현저히 하락하고 거래도 되지 않은 상태로 전락한데다가 환전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고는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인바, 피고 B은 그 당시 원고의 유토큰에의 투자의 근거가 되는 향후 전망에 관하여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에 관한 투자유치 및 투자금 수수 등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TM 인덱스의 판매와 관련해서도 역시 피고 B은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정상적인 지수 선물 투자를 할 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닌 호주의 한 회사가 국내에서 적법하고 유효하게 할 수 없는 사업행위인 지수 선물 투자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투자 유치를 직접 원고에 대하여 하였고, 그 투자금을 직접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이에 더하여 위 투자금의 회수를 직접 담보하고 약속하는 약정까지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TM 인덱스가 비록 생소하기는 하여도 투자할 만한 금융상품이라고 믿게 하여 위와 같은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인데, 이후 위 투자상품은 전혀 금융상품으로서 성립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투자가치를 실현하지도 못함으로써 원고는 그 투자금을 원래의 방식과 경로로는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역시 자신의 투자 유치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B은, 본인도 TM 인덱스에 투자한 사람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투자 상품으로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투자금을 송금받아서 회사에 입금한 후 회원등록을 대신해주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받은 수당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었으며, 원고의 투자는 오로지 스스로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의 투자 손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B이 원고의 투자금을 직접 지급받았고, 그로 인한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그 투자가 피고 B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이상 투자금을 받은 이후에 이를 투자 상품의 발매처 등에 전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 B의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속아서 매입한 유토콘 대금 상당액인 84,000,000원(24,000,000 + 60,000,000)과 TM 인텍스 대금 상당액인 98,868,000원(49,434,000 + 49,434,000)의 합계인 182,868,000원(84,000,000 + 98,868,000)이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1, 을가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투자 이후 피고 B으로부터 2015. 4. 20. 4,494,000원, 2015. 6. 3. 4,494,000원, 2015. 6. 29. 9,63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의 성격을 달리 볼 반대 증거를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마당에 위 돈은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합계금인 18,618,000원(4,494,000 + 4,494,000 + 9,630,000)을 공제하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잔존액은 164,250,000원(182,868,000 - 18,618,000)이다.

#### 나) 책임액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서도 투자 대상인 상품의 운영 및 그로 인한 수익의 구조가 매우 불확실하거나 복잡한 가상화폐나 지수 선물 금융상품인데다가 그 투자를 권유하는 피고 B이 다단계 판매조직에 관여되어 있고 그 투자상품의 판매가 그와 같은 판매 조직의 사업의 주된 내용이



라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상의 수익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이나 그 상품 및 운영자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점검하지 아니하고 고액 수익의 실현 가능성만을 기대하고 성급히 투자에 나아간 결과로서 이와 같은 투자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 B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98,550,000원(164,250,000 X 0.6)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9. 29.까지는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구하는 주위적 청구 원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마당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청구원인으로 기재한 피고 B에 대한 약정을 근거로 한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인용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과 공모하여 앞서 인정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유티즌이나 TM 인덱스에 대한 투자 권유 등에 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수행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투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특히 피고 C는 상품을 소개만 하거나 이에 관한 정보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수령하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공모자이다.

또한 피고 C는 강남구 F건물 302호에서 원고에게 연 수익률이 약 250%인 세계적인 쇼핑몰업체인 원토르의 상품을 소개하며 "투자하면 5개월 내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2015. 4. 7. 피고 C에게 그가 지정한 소외 G의 계좌로 6,020,000원을 송금하고, 추가로 6,0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 C는 원고로부터 편취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2) 판단

갑 제3, 7, 17, 1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가 원고의 이 사건 유토큰 매입을 통한 투자와 관련하여 1회의 추천수당 8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고 이를 원고의 요청에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바 있으며, 유토큰의 시세 전망이 어두워진 시점에서 투자자로서 불안감을 가지는 원고에게 관련 정책을 언급하면서 투자토큰이 많이 빠지면 자연적으로 매물이 줄어들어 오르는 속도가 전보다 빨라질 거라고 한다는 전망을 전달한 사실, ② 원고가 TM 인텍스 M 상품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공동투자를 하자고 제의를 하였으며, 피고 C가 거절하자 원고가 단독으로 투자를 실행한 사실, ③ 원고는 원토르가 제공하는 크루즈 여행상품이 3박 4일의 크루즈 여행을 제공하고 200%를 포인트로 설정하여 추가 보상하는 투자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고서 1회는 원고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하고 그 상품권으로 부부 동반하여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으



: 2017-12-21

며, 추가 1회의 상품권은 본인의 처 명의로 구입하되 수당을 받는 추천인을 원고 본인  
으로 하여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C가 원고가 주장  
하는 투자 상품들인 유토큰, TM 인덱스, 원포르의 크루즈 상품에 관하여 그 실상이나  
전망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거나 앞서 본 피고 B의 유토큰,  
TM 인덱스 상품의 판매에 관한 기망행위에 공모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가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  
를 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